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의요구(안)

의안 번호	12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9. 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# 1. 본 건은

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8월 17일자로 영등포구의회로부터 우리 구에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.

### 2. 재의요구 사유

본 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'04. 8. 17.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 게 보고하였으나, '04. 8. 18.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었으며, 동법 규정에서 재의요구를 받으면 우리 구는 구의회에 재의 요구하도록 강제하는 의무규정에 따라 재의 요구하는 것이며,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(세정과-2215호, '04. 7. 28.)과 아래 등의 사유로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판단되어,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거 재의 요구를 하는 것임.
- 과세기준일 이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소급입법은 세무행정의 공신력, 법적 안정성 및 공평과세를 심하게 해침.
  - 재산세는 6.1 현재 시행되는 지방세법령(조례 포함)에 따라 당해 물건 현황과 과표·세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과세기준일(6. 1.)에 성립됨
  - 따라서 재산세 납기경과와 납부의무이행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 현재 시점에서 재산세의 세액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
    - 세무행정의 공신력, 법적 안정성,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 저해 등 어떠한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향후 전국적인 과세행정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공익을 현저히 해함
-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남
  - 헌법(제38조)에서 조세의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비록 지방세법(제188조제6항)에서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
  - 지방세법에 조례로서 소급할 수 있는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재산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움
  - 또한, 과세기준일(6. 1.) 전에 인상률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전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이유가 특단의 사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
  - 만일, 소급적 세율인하가 시행될 경우 이미 확정되어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된 다른 모든 조세법률 관계도 불안정한 상태로 영향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리게 됨

- 과세대상 일부의 소급적 세율인하는 조세 불형평성을 초래함
  - 소급입법으로 일부 납세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세공평주의에 합당하여야 하는데
  - 세율인하 소급적용으로 일부 납세자 부담이 경감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불특정 다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
  -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에 대한 세율만 인하함으로써 상가 등 다른 과세물건 소유자들과의 과세형평을 저해하며
  -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그 인상률이 일부 완화되는 반면, 과표 인상이 거의 없는 단독주택은 오히려 세액이 전년보다 인하여 주택 간의 과세형평이 저해됨으로서, 특정한 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것임
  - 또한, 집단적 조세저항의 예방을 위하여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조치는 그 정책목적이 합리적이거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

□ 따라서, 소급적용을 규정한 이 건 조례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위입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, 헌법상 평등의 원칙, 조세공평주의 및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치안정성을 침해한 위헌·위법의 조례안으로 판단

### 3. 재의요구 대상조례

- 조 례 명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- 주요 골자  
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 제21조의2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25% 인하하여 과세기준일 2004. 6. 1. 해당부과분 재산세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개정

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헌법
  -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.
  -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.
- 국세기본법 제18조(세법해석의 기준, 소급과세의 금지)
- 지방세법 제188조(세율)
- 지방자치법 제19조 (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)
  -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기간(20일)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.
- 지방자치법 제159조(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)
  -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·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,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